

용자추천 대상자 선정 후 협약은행(하나은행)에 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입니다.

- 1) 서울특별시 추천서
 - 2) 인적 / 본인 확인서류
 -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 - 신분증 사본
 - 혼인관계증명서(기혼자)
 - 3) 소득 · 재직서류
 - ① 직장인
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- 연간소득확인서류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)
 - 재직증명서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)
 - ② 자영업자
 - 연간소득확인서류(소득금액증명원등의 총소득액)
 - 사업자등록증 사본(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) 또는 사업영위 증빙서류
 - ③ 기타
 - 건강보험료 납부서류(추정소득 사용시)
 - 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(세무서발행)
 - 4) 자금용도 확인서류(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류)
 -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(사본징구)
 - 계약금 지급 영수증(임차보증금의 5%이상, 사본징구)
- ※ 자세한 사항은, 하나은행 콜센터 1599-2222으로 문의하세요.

**(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적용)
협약은행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**

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신청대상자 협약은행(하나은행)에 대출연장 신청시 필요 서류입니다.

※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하며, 신청일 1개월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.

□ 공통 서류

- 주민등록 등·초본(1개월이내 발급분),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, 계약해지 통보서류(내용증명 등), 등기부등본(1개월이내 발급분)

□ 유형별 서류

-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경우 (아래 각 호 중 하나)
 1.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(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)
 2.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법원결정문 사본
 3.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등기부등본

- 임차주택에 경매/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(아래 각 호 중 하나)
 1. 경매/공매 개시 결정문 또는 경매/공매 통지서
 2. 압류 및 경매/공매개시결정 또는 공고가 기재된 등기부등본
 3.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서,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접수증명원
 4. 매각물건명세서 (주거임차인으로서 점유자 성명, 임대차기간, 보증금, 전입일자, 확정일자, 배당요구일자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)

- 임차주택에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(아래 각 호 중 하나)
 1. 소송접수증명원/ 2. 소송계속증명원 / 3. 소제기증명원

※ 자세한 사항은, 하나은행 콜센터 1599-2222으로 문의하세요.